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청 정문~남해탕, 시장아랫길 롯데마트~남해 그린농마트 일원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남 해 군 수

I | 지정 목적

- 남해읍 시장 아랫길 등의 노후되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광고물을 건물의 이미지와 조화롭게 디자인된 광고물로 정비하여 품격있는 가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II | 정비시범구역 지정

1. 정비시범구역 지정

가. 지정구간 : 890m

○ 남해군청 정문 ~ 남해탕(110m)

○ 시장 아랫길 롯데마트 ~ 남해그린 농마트(780m)

나. 지정구간 위치도 : 【붙임 #1】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남해읍 간판개선 시범사업

나. 사업기간 : 2013. 3월 ~ 7월

다. 규 모 : 업소수100개, 간판수200개(가로형100개, 돌출형100개) 정비

라. 사업비 : 380백만원 (국비170백만원, 군비170백만원, 자부담40백만원)

※ 자부담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10%를 적용한다

마. 정비내용

○ 가로형간판 : 입체형(노후 건물 1층의 경우는 벽면 파사드 적용)

○ 돌출형간판 : 가로 · 세로 각1m이내로 소형화

○ 조명류 : 형광, 백열, 네온 등을 “LED내장” 위주로 교체

바. 예산지원 : 업소당 500만원 이내 지원

III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1.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가. 1개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업소의 2면 이상이 직접 도로에 접할 경우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등(“+”, “약”), 이 · 미용업소의 싸인볼

3) 건물에 설치하는 건물명 표시 입체형 간판

나. 간판에는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 할 수 있으며, 실물사진 이미지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다.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판 게시틀(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 설치틀)의 설치를 권장한다.

라. 커튼월(Curtain Wall, 비 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형 간판의 경우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바. 도시 경관의 향상 및 광고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상징도안, 상징이미지, 픽토그램 또는 여백 등을 광고물에 적극 사용하도록 한다.
- 사. 광고물 등의 문자는 한글, 한자, 외국문자 또는 특수문자(국제 이디어그램)로 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아. 저채도의 지역색상을 고려하여 적용시키며, 가급적 한 건물 내에서 는 같은 유형의 색채를 사용함
- 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직·간접적으로 여성의 성성을 상품화하거나 음란·저속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2. 광고물 등의 조명 표시방법

- 가. 광고물의 조명은 입체형 글자 내부에 LED 조명을 하거나, 간판 외부에 직·간접 조명을 할 수 있다.
- 나. 점멸 또는 화면변환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형식의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 다. 형광도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3.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가. 가로형간판

- 1) 1개의 업소 당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3층 이하에만 표시 할 수 있다(4층 이상은 돌출간판 1개만 설치가능)
- 2)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 건물 1층의 경우 충간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 3) 간판의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 폭의 8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대10m이내), 같은 충의 다른 간판과의 상·하를 일치하게 설치하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폭의 80퍼센트를 벗어날 수 없다.

- 4) 글자 크기는 휴먼스케일을 감안하여 위층과 아래층 창문과 창문 사이 벽면 폭의 70퍼센트 이내에서 1층은 500mm, 2~3층은 550mm이하로 한다. 단, 브랜드 로고나 심벌마크, 픽토그램, 이디어그램은 글자크기의 150% 이내에서 증가 가능하다.
- 5)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cm 이내로 한다.
- 6) 간판의 위치는 각 층 상단 정면(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의 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특성상 옥상 난간 또는 지붕을 지지하지 않으면 가로형 광고물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틀을 설치하여 지붕 또는 처마에 광고물을 표시 할 수 있다(이 경우 가로형 간판으로 보며, 안전점검을 거쳐야 한다.)
- 7) 지하 업소는 출입구 폭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돌출간판

- 1) 1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해당 건물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 폭 · 두께 · 가로폭 등이 같은 건물의 다른 돌출 간판과 같은 크기로 상·하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2)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이어야 하며, 건물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건물의 정면(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의 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정면 폭이 10m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m 초과 당 1줄씩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4) 간판의 가로크기와 세로크기는 각각 1m 이내로 하며, 간판의 바깥 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소형 돌출간판

- 1) 돌출간판 표시가 곤란한 건축물 1층에는 업소 출입구 좌·우측 중 한 곳에 소형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2)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하며, 소형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돌출 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 3) 단순히 상호를 나타내기 보다는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 형태를 권장하며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 돌출폭 0.8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판 1면의 면적은 0.36m^2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물 측·후면 벽면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및 지주 이용간판은 설치·표시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이 건축선으로부터 2m이상 후퇴한 경우에는 돌출간판을 대신하여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을 따른다.

마. 창문이용광고물은 설치·표시할 수 없다. 다만, 1층에 한하여 창문 및 출입문 면적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업소의 심볼 마크의 표시는 허용한다.

바. 현수막 및 애드벌룬의 표시를 금지한다.

4.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가.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정비시범구역으로 정한 해당 건축물에 표시할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광고물관련 고시내용 등을 말한다)을 서면으로 고지할 수 있다.

나. 미관향상을 위하여 정비시범구역 내의 건축사용 승인 시 광고물 설

치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검사신청 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허가·신고하여 표시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광고물 등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
- 3.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붙임 #1】

정비시범구역의 범위

- 남해군청 정문 ~ 남해탕(110m)
- 시장 아랫길 롯데마트 ~ 남해그린 농마트(780m)

